

	<h2>교육성과평가위원회 규정</h2>	문서번호	5-1-35		
		제정일	2014. 01. 01.		
		개정일	2022. 02. 18.		
		페이지	1/1	관리 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 졸업예정자의 핵심역량 평가, 프로그램 학습성과 운영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 및 집행하기 위한 교육성과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핵심역량 평가와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종합평가를 주관한다.

- ② 핵심역량과 학습성과에 대한 성취를 향상하기 위해 개선계획의 수립, 개선활동, 기타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- ③ 졸업시기 평가 후 학습성과 미도달자에 대해 적절한 개선활동을 계획하여 실시한다.
- ④ 졸업생의 역량평가 및 교육만족도 평가를 계획하여 실시한다.
- ⑤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운영은 별도의 지침을 따른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

-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회의)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학기 법정 수업시간 중 지정일에 소집하여, 휴회 및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-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나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

제5조(의결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가 결의하고 교무처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르며, 연간 결과보고서를 회기 종료일까지 총장에게 보고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교육성과평가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35		
		제정일	2014. 01. 01.		
		개정일	2022. 02. 18.		
		페이지	2/1	관리 부서	교무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